

군산시 공고 제2017-1555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함에 따라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 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괄정비

2. 주요내용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14개 조례에 대하여 「정부조직법」에 맞게 인용 조항을 개정함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전화 : 454-2343, FAX : 452-8157, 전자우편 : cej0820@korea.kr)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계(전화 063-454-2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군산시 정보화 조례」의 개정)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도지사”로 한다.

제5조(「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7조(「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9조(「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라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의 개정)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u>안전행정부 장관</u>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p> <p>④ (생략)</p>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행정안전부 장관</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u>안전행정부 장관</u>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안전행정부 장관</u>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p>	<p>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 ----- ----- ----- ----- <u>행정안전부 장관</u>----- -----.</p> <p>② ----- ----- <u>행정안전부장관</u>----- -----.</p>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행정안전부장관-----

-----.

② -----

행정안전부장관-----

-----.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행정안전부장관-----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
와 같이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
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
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
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행정안전부장
관-----
-----.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군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 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 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 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서 처리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u> <u>·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u> <u>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u> <u>나 처분할 사항</u></p> <p>4. · 5. (생략)</p> <p>② (생략)</p>	<p>제14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①-</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u> <u>도지사</u>-----</p> <p>-----</p> <p>-----</p> <p>4.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5조(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p> <p>① 시장은 군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중소기업청장이</u> 정하는 전통상점가</p> <p>②·③ (생략)</p>	<p>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p> <p>① -----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제6조(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2. (생략)</p> <p>3. <u>중소기업청</u>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p>	<p>제6조(제외대상) -----</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중소벤처기업부</u> -----</p> <p>-----</p> <p>-----</p>

신 · 구조문대비표

제8조(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및 확인)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u>중소기업청</u> 의 고시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및 확인) ----- ----- ----- ----- ----- <u>중소벤처기</u> <u>업부</u> -----.

신 · 구조문대비표

제9조(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 68조제3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과 같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용도)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3.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u>국민안전처장관</u> 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라. ----- <u>행정안전부장관</u> - ----- ----- -----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제10조(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 (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 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제7조 (기능)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국민안전처장관</u> 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중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사항에 포함	4.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1조(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u>국민안전처장관</u> 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4.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	-----
			-----	-----
			-----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제12조(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2조(상황보고) ①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13조(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 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 8. (생략)	제2조(정의) ----- ----- . 1. ----- ----- ----- ----- ----- ----- <u>행정안전부령</u> ----- ----- . 2. ~ 8.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제14조(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u>행정자치부령</u> 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 ----- <u>행정안전부령</u> ----- ----- -----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7-155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일괄 개정함에 따라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 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일괄 정비

2. 주요내용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9개 규칙에 대하여 「정부조직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함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층 기획 예산과(전화 : 454-2343, FAX : 452-8157, 전자우편 : cej0820@korea.kr)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계(전화 063- 454-2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

제1조(「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 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2조(「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3조(「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 을 “외교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한다.

제14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7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7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군산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의 개정) 군산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건설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군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u>안전행정부</u>에서 마련한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청백-e 시스템"이라 한다),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p> <p>3. ~ 1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행정안전부</u> ----- ----- ----- ----- ----- ----- ----- ----- -----.</p> <p>3. ~ 12. (현행과 같음)</p>
<p>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u>안전행정부 장관</u>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p>
<p>제19조(평가)①·② (생략)</p>	<p>제19조(평가)①·② (현행과 같음)</p>

③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확인
 ·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21조(제도지원)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
 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
 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 행정안전부-----

 -----.

제21조(제도지원) -----

 ----- 행
 정안전부장관-----
 -----.

신 · 구조문대비표

제3조(군산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주택임차료 지급) 주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되, 임차료의 산정(算定)은 <u>외교통상부장관</u>이 정하는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임차료 기준」을 준용 한다. 다만 군산시에서 주택을 직접 임차(賃借)하거나 파견받을 국가의 기관 등에서 주택을 제공할 때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주택임차료 지급) ----- ----- ----- ----- <u>외교</u> <u>부장관</u>----- ----- ----- ----- ----- -----.</p>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군산시 재무회계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p> <p>② (생략)</p>	<p>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①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등)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등) ①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4조(계약의 체결)①·② (생략)</p> <p>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6호 서식 내지 제67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u>행정자치부</u> 예규) 신용</p>	<p>제124조(계약의 체결)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행정안전부</u>-----</p>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산업입지보조금)①(생략)	제5조(산업입지보조금)① (현행과 같음)
②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u>산업자원부장관</u> 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 ----- --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군산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u>내무부장관</u> 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안의 작성)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제110조(자산 재평가) 공영개발사업의 자산을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때에는 <u>내무부</u> 의 자산재평가 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10조(자산 재평가) ----- ----- ----- - <u>행정안전부</u> ----- -----.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품구입) ①농기계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u>농림부</u>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② (생 략)	제4조(부품구입) ①----- ----- <u>농림축</u> <u>산식품부</u> ----- -----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제8조(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2조 제1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u>건설부</u> 표준단가에 의한다.	제10조(공사비 산출) ----- ----- ----- <u>국토교통부</u> ----- -----.

신·구조문대비표

제9조(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u>행정</u> <u>자치부 장관</u> 이 작성 시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 ----- <u>행정</u> <u>안전부 장관</u> ----- ----- ----- ----- -----.

관 계 법 령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7-112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고시

2017년 내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따른 지적도근점(44점) 측량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5일
군 산 시 장

번호	기준점 번호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 일자	표지 재질	
		평면직각좌표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1	6463	X	272523.51	35°57'08"	X	372829.68	중부	21.7	내초동 45-1	2017. 6.19	철재
		Y	163064.50	126°35'29"	Y	163136.98					
2	6464	X	272539.78	35°57'09"	X	372845.95	중부	20.0	내초동 45-1	2017. 6.19	철재
		Y	163084.84	126°35'30"	Y	163157.31					
3	6465	X	272585.66	35°57'10"	X	372891.83	중부	19.3	내초동 산26- 37	2017. 6.19	철재
		Y	163120.70	126°35'31"	Y	163193.17					
4	6466	X	272559.16	35°57'09"	X	372865.33	중부	20.8	내초동 30-25	2017. 6.19	철재
		Y	163164.45	126°35'33"	Y	163236.93					

번호	기준점 번호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 일자	표지 재질	
		평면직각좌표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5	6467	X	272525.85	35°57'08"	X	372832.02	중부	19.4	내초동 산30- 8	2017. 6.19	철재
		Y	163190.83	126°35'34"	Y	163263.30					
6	6468	X	272497.12	35°57'07"	X	372803.29	중부	13.6	내초동 1468	2017. 6.19	철재
		Y	163149.12	126°35'32"	Y	163221.59					
7	6469	X	272438.53	35°57'06"	X	372744.70	중부	10.8	내초동 148	2017. 6.19	철재
		Y	163205.30	126°35'35"	Y	163277.77					
8	6470	X	272463.19	35°57'06"	X	372769.36	중부	10.8	내초동 30-2	2017. 6.19	철재
		Y	163233.36	126°35'36"	Y	163305.84					
9	6471	X	272458.69	35°57'06"	X	372764.86	중부	9.9	내초동 12	2017. 6.19	철재
		Y	163256.17	126°35'37"	Y	163328.64					
10	6472	X	272477.02	35°57'07"	X	372783.19	중부	10.4	내초동 13-1	2017. 6.19	철재
		Y	163279.56	126°35'38"	Y	163352.03					
11	6473	X	272430.65	35°57'05"	X	372736.82	중부	9.5	내초동 148	2017. 6.19	철재
		Y	163244.78	126°35'36"	Y	163317.25					
12	6474	X	272408.99	35°57'05"	X	372715.16	중부	9.3	내초동 25	2017. 6.19	철재
		Y	163245.44	126°35'36"	Y	163317.92					
13	6475	X	272371.75	35°57'03"	X	372677.92	중부	9.2	내초동 148	2017. 6.19	철재
		Y	163261.45	126°35'37"	Y	163333.92					
14	6476	X	272417.23	35°57'05"	X	372723.41	중부	4.2	내초동 225	2017. 6.19	철재
		Y	163309.28	126°35'39"	Y	163381.75					

번호	기준점 번호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 일자	표지 재질	
		평면직각좌표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X
15	6477	X	272481.94	35°57'07"	X	372788.11	중부	4.1	내초동 225	2017 .6.19	철재
		Y	163322.98	126°35'39"	Y	163395.46					
16	6478	X	272533.32	35°57'09"	X	372839.49	중부	7.2	내초동 10-5	2017 .6.19	철재
		Y	163304.79	126°35'39"	Y	163377.27					
17	6479	X	272552.59	35°57'09"	X	372858.76	중부	4.1	내초동 225	2017 .6.19	철재
		Y	163354.73	126°35'41"	Y	163427.20					
18	6480	X	272626.24	35°57'12"	X	372932.42	중부	3.7	내초동 225	2017 .6.19	철재
		Y	163366.85	126°35'41"	Y	163439.32					
19	6481	X	272708.27	35°57'14"	X	373014.44	중부	3.9	내초동 225	2017 .6.19	철재
		Y	163306.36	126°35'39"	Y	163378.82					
20	6482	X	272780.63	35°57'17"	X	373086.80	중부	4.8	내초동 225	2017 .6.19	철재
		Y	163223.54	126°35'35"	Y	163296.01					
21	6483	X	272833.74	35°57'18"	X	373139.91	중부	2.2	내초동 226	2017 .6.19	철재
		Y	163303.62	126°35'39"	Y	163376.08					
22	6484	X	272784.89	35°57'17"	X	373091.06	중부	1.0	내초동 226	2017 .6.19	철재
		Y	163342.09	126°35'40"	Y	163414.55					
23	6485	X	272691.41	35°57'14"	X	372997.58	중부	1.4	내초동 226	2017 .6.19	철재
		Y	163407.43	126°35'43"	Y	163479.90					
24	6486	X	272297.87	35°57'01"	X	372604.04	중부	13.3	내초동 148	2017 .6.19	철재
		Y	163263.73	126°35'37"	Y	163336.21					

번호	기준점 번호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투 영 원 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 일자	표지 재질	
		평면직각좌표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25	6487	X	272266.93	35°56'60"	X	372573.10	13.9	내초동 148	2017. 6.19	철재	
		Y	163244.23	126°35'36"	Y	163316.70					
26	6488	X	272353.37	35°57'03"	X	372659.54	13.4	내초동 20-1	2017. 6.19	철재	
		Y	163216.55	126°35'35"	Y	163289.03					
27	6489	X	272401.37	35°57'04"	X	372707.54	10.6	내초동 148	2017. 6.19	철재	
		Y	163199.31	126°35'34"	Y	163271.78					
28	6490	X	272428.32	35°57'05"	X	372734.49	9.7	내초동 59-7	2017. 6.19	철재	
		Y	163141.34	126°35'32"	Y	163213.81					
29	6491	X	272439.37	35°57'06"	X	372745.54	10.5	내초동 산24	2017. 6.19	철재	
		Y	163113.57	126°35'31"	Y	163186.04					
30	6492	X	272474.55	35°57'07"	X	372780.72	19.3	내초동 산23-2	2017. 6.19	철재	
		Y	163072.14	126°35'29"	Y	163144.62					
31	6493	X	272423.51	35°57'05"	X	372729.68	10.5	내초동 59-9	2017. 6.19	철재	
		Y	163100.60	126°35'31"	Y	163173.07					
32	6494	X	272427.70	35°57'05"	X	372733.87	12.1	내초동 59-8	2017. 6.19	철재	
		Y	163081.79	126°35'30"	Y	163154.26					
33	6495	X	272414.87	35°57'05"	X	372721.04	12.1	내초동 59-13	2017. 6.19	철재	
		Y	163061.22	126°35'29"	Y	163133.69					
34	6496	X	272370.30	35°57'03"	X	372676.47	5.5	내초동 산19-1	2017. 6.19	철재	
		Y	163039.23	126°35'28"	Y	163111.70					

번호	기준점 번호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 일자	표지 재질	
		평면직각좌표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35	6497	X	272367.62	35°57'03"	X	372673.79	중부	9.2	내초동 80-1	2017 .6.19	철재
		Y	163177.88	126°35'34"	Y	163250.36					
36	6498	X	272339.88	35°57'02"	X	372646.05	중부	6.8	내초동 6498	2017 .6.19	철재
		Y	163153.72	126°35'33"	Y	163226.20					
37	6499	X	272340.27	35°57'02"	X	372646.44	중부	5.7	내초동 143-1	2017 .6.19	철재
		Y	163121.74	126°35'31"	Y	163194.21					
38	6500	X	272265.03	35°56'60"	X	372571.20	중부	5.1	오식도동 231	2017 .6.19	철재
		Y	163161.19	126°35'33"	Y	163233.67					
39	6501	X	272227.07	35°56'59"	X	372533.24	중부	5.1	오식도동 231	2017 .6.19	철재
		Y	163194.11	126°35'34"	Y	163266.59					
40	6502	X	272117.10	35°56'55"	X	372423.27	중부	5.6	오식도동 827	2017 .6.19	철재
		Y	163211.03	126°35'35"	Y	163283.51					
41	6503	X	272113.47	35°56'55"	X	372419.64	중부	5.8	내초동 104-5	2017 .6.19	철재
		Y	163250.91	126°35'37"	Y	163323.39					
42	6504	X	272217.46	35°56'58"	X	372523.64	중부	8.1	내초동 95-20	2017 .6.19	철재
		Y	163286.65	126°35'38"	Y	163359.13					
43	6505	X	272158.51	35°56'56"	X	372464.69	중부	4.8	내초동 391	2017 .6.19	철재
		Y	163370.81	126°35'41"	Y	163443.29					
44	6506	X	272025.59	35°56'52"	X	372331.76	중부	4.0	내초동 225-11	2017 .6.19	철재
		Y	163457.78	126°35'45"	Y	163530.26					

측량성과 보관 장소 :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063-454-3963)

군산시 고시 제2017-11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간호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1982-334호(1982.12.2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영 중인 학교(군산간호대학교)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개정동 41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나. 명 칭 : 군산간호대학교 2동(창고시설) 용도변경 및 인테리어공사
3. 사업내용 : 건축물 용도변경 (창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건축규모 : 변경없음 (1동/1층, 건축면적 105㎡, 건축연면적 105㎡)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동개정길 7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학교법인 경암학원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17. 12. 31.
6.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군산시 개정동	1	31-5	학	5,411	5,411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2	31-23	도	122	114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3	413-6	도	727	98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4	413-7	학	4,406	4,406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5	668-7	학	436	436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6	32-3	대	1,964	1,825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7	32-4	대	5,078	5,078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8	32-5	대	1,425	1,252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9	380-2	대	1,031	85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10	413-1	대	7,436	6,898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11	413-9	대	146	146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12	413-11	대	934	934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13	667	구	10,412	111	국(농수산부)					
	14	668	도	37,530	1,050	국(농수산부)					
계	14필지			77,058	27,844						

군산시 고시 제2017-11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승인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하며,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대학 (군산대학교)	군산시 미룡동 산68번지 일원	822,092	-	822,092		

2. 도시계획시설(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22,092	-	822,092	100.0	
군 산 대 학교	교육시설	341,626	-	341,626	41.5	
	체육시설	56,520	-	56,520	6.9	
	도 로	42,496	-	42,496	5.2	
	녹 지	381,450	-	381,450	46.4	

나. 건축물계획(변경)

시 설 명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76,351	240,764	증) 314	증) 1,968	77,665	242,732	
교육 시설	소 계	37,972	135,169	증) 314	증) 1,968	38,286	137,137	
	인문관	3,642	12,606	-	-	3,642	12,606	
	사회과학관	2,202	8,576	-	-	2,202	8,576	
	이학관	3,429	14,714	-	-	3,429	14,714	3동
	예술대	2,579	7,349	-	-	2,579	7,349	5동
	공대4호관	1,656	4,004	-	-	1,656	4,004	
	공학관	4,177	19,412	-	-	4,177	19,412	3동
	예술대2호관	1,409	2,508	-	-	1,409	2,508	
	자연대4호관	1,053	1,813	-	-	1,053	1,813	
	해양과학관	4,162	21,569	-	-	4,162	21,569	2동
	공동실험 실습관	3,832	9,110	-	-	3,832	9,110	
	학생회관	3,623	11,416	-	-	3,623	11,416	2동
	황룡도서관	1,895	5,170	증) 314	증) 1,968	2,209	7,138	
	대학본부	1,023	3,693	-	-	1,023	3,693	
	중앙도서관	1,948	7,706	-	-	1,948	7,706	
	산학연합동관	1,342	5,523	-	-	1,342	5,523	
지원 시설	소 계	18,998	63,114	-	-	18,998	63,114	
	동력실	790	897	-	-	790	897	
	체육관	3,015	4,158	-	-	3,015	4,158	
	정문안내실	71	63	-	-	71	63	
	종합교육관	1,786	5,668	-	-	1,786	5,668	
	기숙사	6,757	35,381	-	-	6,757	35,381	6동
	게스트하우스	3,000	11,000	-	-	3,000	11,000	
	생활관관리동	1,499	2,867	-	-	1,499	2,867	
	창업보육센터	1,080	1,080	-	-	1,080	1,080	
	매점	1,000	2,000	-	-	1,000	2,000	

시설명		건축면적(m ²)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연구 시설	소 계	5,240	15,585	-	-	5,240	15,585	
	황룡문화관	1,990	4,995	-	-	1,990	4,995	
	해양생물연구센터	650	2,526	-	-	650	2,526	
	디지털기술정보센터	2,600	8,064	-	-	2,600	8,064	
부속 시설	소 계	14,141	26,896			14,141	26,896	
	공대부속공장	2,103	5,636	-	-	2,103	5,636	4동
	외국인생활관	168	804	-	-	168	804	
	후생종합복지관	2,000	8,500	-	-	2,000	8,500	
	기관공장	1,164	1,491	-	-	1,164	1,491	
	식품가공실습관	977	977	-	-	977	977	
	양어장	1,501	1,972	-	-	1,501	1,972	
	수산공학실험관	310	310	-	-	310	310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부품센터공장수변전실)	1,167	1,354	-	-	1,167	1,354	
	학군단 (학군단창고)	574	1,600	-	-	574	1,600	
	버스차고	1,500	1,500	-	-	1,500	1,500	
	해상안전교육장	330	330	-	-	330	330	
	목공창고	276	276	-	-	276	276	
	차고 (주차장부속건물)	60	60	-	-	60	60	
	골프학습장	933	988	-	-	933	988	
	본부석	223	223	-	-	223	223	
	인조잔디구장관리소	60	60	-	-	60	60	
	학생테니스장관리소	140	140	-	-	140	140	
	온실	200	200	-	-	200	200	
구조재료실험관	260	280	-	-	260	280		
황룡마루	195	195	-	-	195	195		

3. 도시계획시설(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룡동 29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 나. 명 칭 : 군산대학교 황룡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사업면적 : 822,092㎡
 - 나. 건축규모 : (기준) 1동/3층, 건축면적 1,894.05㎡, 건축연면적 5,169.04㎡
(변경) 1동/4층, 건축면적 2,207.74㎡, 건축연면적 7,136.7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 나. 성 명 : 군산대학교 총장 나의균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18.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실음생략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7-115호

군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군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1. 고시제목 : 군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고시
2. 고시내용
 - 기본계획 명칭 : 군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목적 및 필요성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공간적 범위 : 군산시 행정구역 전체
 - 기본계획 계획년도 : 2018년 ~ 2022년(5년)
 - 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군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확정 고시
3. 열람장소 : 군산시 건설과 도로계획계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건설과 (☎063-454-3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7 - 116호

개야도 마을상수도 인가 고시

개야도 마을상수도를 『수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군산시장(군산시 시청로 17, 수도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개야도 지역주민의 식수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사업
 - 개 요 : 저수지확장 46,000톤, 정수장 200톤/일, 배수지 200톤, 관로교체 6.6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5.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 급수인구 : 435명
 - 급 수 량 : 128m³/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 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19년
 - 급수예정일 : 2020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도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도붙임

군산시 공고 제2017-117호

생활임금 고시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6조에 근거 2018년 적용되는 군산시 생활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1. 생활임금액

- 시간급 : 8,130원

2. 생활임금 적용대상

-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

※ 적용제외

-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제2항에 해당된 근로자

-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군산시 공고 제2017-153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24호선)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8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17. 9. 4. ~' 17. 9. 18.)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소룡동 746-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24호선)사업
 - 2) 명 칭 : 소룡동 업무시설(오피스텔)신축에 따른 신도시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금회 실시계획 내용			비고
	폭원(m)	연장(m)	최초결정일	폭원(m)	연장(m)	면적(m ²)	
소로1-124	10	585	1996.06.01.	10	120	1,145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요죽5길 21, 302호(오식도동,센트럴프라자)
- 2) 사업시행자 성명 : (유)우리개발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19. 7.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붙임참고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746-1	답	25	16	최정자	군산시 둔율동 147-10					
						한일웅	군산시 중앙로2가89-2					
						이재홍	군산시 나운동 835 주공3차아파트 117동106호					
						이준전	군산시 소룡동 1047-31					
2		747-2	답	52	52	유한회사 우리개발	군산시 요죽5길 21,302호 (오식도동, 센트럴프라자)					
3		748-1	답	48	48	유한회사 미래개발	군산시 요죽5길 21,302호 (오식도동, 센트럴프라자)	고산농업 협동조합	완주군고산면 고산로77	근저당 지상권		
4		749-1	답	45	45	유한회사 베스트산업개발	군산시 소룡동 737 베스트프라자 에이동1층	고산농업 협동조합	완주군고산면 고산로77	근저당 지상권		
5		753-1	도	49	1	군산시						
6	소룡동	767-2	답	35	21	김창곤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502					
7		768-2	답	37	37	군산시						
8		769-2	답	38	38	군산시						
9		770-2	답	78	78	군산시						
10		771-2	답	77	77	장정자	해망동 999-109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지상권		
11		771-3	도	208	21	군산시						
12		772-2	도	82	3	군산시						
13		772-3	도	1,756	10	군산시						
14		1003	구	19,938	698	국(농수산부)						
계		14필지		22,468	1,145							

군산시 공고 제2017-1584호

경관협정 인가 공고

경관법 제21조에 따라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협정명칭 :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
2. 인가근거 : 경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3. 공고내용
 -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에 대하여 경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함
4. 협정지역

구분	협정 지역	기타
1	거석4길 ~ 창성2길, 중앙로165 ~ 거석길29, 중정길68 ~ 중정길50, 중정길59 ~ 중정2길 14	

5. 공고기간 : 2017.9.15.~ 2017.10.16.(31일간)
6. 게재방법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2017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예규 제33호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9월 1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1항”을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을 “군산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를 “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로, “제38조 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한다)”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를 “라 한다)”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를 “법 제18조”로, “의거 안전총괄과장 또는 당직사령은”을 “따라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근무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 예·경보의 발령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6조제2호 중 “기상업무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로, “제6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경보 운영책임자는 상황실의 근무자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 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지정·운영하여야”를 “지정·운영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로 한다.

제11조 중 “시장은 법 제26조의”를 “군산시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으로, “법 제68조제2항”을 “법 제68조제3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로 한다.

별지(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기록부)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재난 예·경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별>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카드 작성요령

- ① 관리번호 : 시·군·구별로 관리하는 예·경보 시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번호를 부여 기입
 - 기상관측 시스템 : 자동우량(산간계곡)경보시설 00시-01, 우량(AWS)관측시설 00시-02, 재난문자전광판 00시-03, 자동음성통보시스템 00시-04, 재난감시카메라(CCTV) 00시-05, 수위관측시설 00시-06, 위성전화기 00시-07로하고 나머지장비는 00시-08, 순으로 자체 번호 부여 관리
 -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의 경우는 00사-01-01(통제대), 00사-01-02(감시대), 00사-01-03(중계기), 00사-01-04(경보기 등) 순으로 기지국 수대로 작성
- ② 시설구분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등 장비명 기입
- ③ 지구명 : 예·경보 지구별로 구분, 기입
- ④ 위치 -
 - 주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와 ()안에 해당되는 마을명이나 산(봉우리)이름 기입하고
 - 상세위치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우량계의 경우는 00소하천 최상류로부터 00km 지점, 경보기·중계기는 우량계로부터 00km지점
- ⑤ 하천명 및 유역연장 : 시스템이 위치한 하천명(00소하천, 00천)과 유역 총연장 기입(해변, 유원지 등의 경우는 해변명칭·연장 등 기입)
- ⑥ 시공상황 : 당초 설치기간, 업체, 사업비 등을 기입
- ⑦ 발령기준 : 예·경보시스템별로 경보발령기준 기입(경계, 대피, 중대피 등으로 구분)
- ⑧ 통신방식 : 시설별로 사용되는 통신방식과 주파수 등 기입
- ⑨ 관리책임자 : 2015년 현재 담당하는 과(장), 계·팀(장), 담당자 직급·성명·전화번호(휴대폰) 등을 기입(인사이드시 수정)
- ⑩ 점검기간(유지보수용역기간) : 2005년 이후 자체점검 및 유지보수용역 기간 기입
- ⑪ 점검내역 : 자체점검 및 유지보수 내역 기입
- ⑫ 수리내역 : 자체점검 및 유지보수용역기간 동안 수리내역 기입
- ⑬ 유지보수 사업비 : 자체점검 시 수리비와 유지보수용역비 등 기입
- ⑭ 점검 자(공무원) 및 유지보수업체 : 자체점검 및 유지보수업체(전화번호 포함) 기입
- ⑮ 관리상태 : 정상운영, 수리(보수) 후 운영예정 등 현재 관리상태 기입
- ⑯ 설치위치 적정여부 :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위치 적정성 기입
- ⑰ 학 인 : 담당자(공무원) 등이 자체점검과 유지보수용역 완료 후 확인일자 및 확인자 기입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카드(자동음성통보장치)

①관리번호	군산시-08-04				㉑현황사진			
②시설구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③지구명	00 지구							
④위치	주소	주소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146						
	상세위치	말도 선착장						
⑤하천명 및 유역연장	도서지역							
	착공일		준공일					
⑥시공상황	업체명							
	사 업 비							
⑦예·경보 발령기준	기상특보 발령, 시우량 00mm(경계), 00mm(대피), 00mm(중대피), 00이하 00교 수위 000m(경계), 000m(대피) 등							
⑧통신방식								
⑨관리 책임자	직 위	소 속	직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과							
	계장(팀장)							
	담당자							
	㉒위 치 도(1/50,000)							

수 선 내 역 표

일 시	내 역	업 체	비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표 1] <신 설>

재난 상황별 예·경보 문안

[사회재난]

재난유형	대상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산단가스누출 (유해화학물질)	일반인	00시00분 현재 군산시 00동 소재 00공장에서 가스(유해화학 물질 병)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 인근과 00쪽에 위치한 주민계서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시고 특이사항이 있 을 시 즉시 주민센터 및 군산재난종합상황실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 다. 00시00분 현재 군산시 00동 소재 00공장에서 가스누출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스는 00방향으로 확산 중이니, 사고지점 인 근과 00쪽에 위치한 주민계서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시고 특이사항이 있을 시 즉시 주 민센터 및 군산재난종합상황실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군산시 00동 소재 00공장에서 가스누출사고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명 령하오니 5층 재난종합상황실 집결요망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반복	

재난유형	대상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산단가스폭팔 (유해화학물질)	일반인	<p>00시00분 현재 군산시 00동 소재 00공장에서 가스(유해화학 물질 명)폭팔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 인근과 00쪽에 위치한 주민께서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시고 특이사항이 있 을 시 즉시 주민센터 및 군산재난종합상황실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p>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 다. 00시00분 현재 군산시 00동 소재 00공장에서 가스폭팔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스는 00방향으로 확산 중이니, 사고지점 인근과 00쪽에 위치한 주민께서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시고 특이사항이 있을 시 즉시 주민센터 및 군산재난종합상황실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공무원	<p>군산시 00동 소재 00공장에서 가스(유해화학물질 명) 폭팔에 따른 재난안 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명령하오니 5층 재난종합상황실 직결요망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p>반복</p>	

재난유형	대상	문자전송 (안)	음성통보 (안)	비고
대형화재	일반인	<p>00시00분 화재 군산시 00동 소재 00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00쪽에 위치한 주민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p>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00시00분 화재 군산시 00동 소재 00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00쪽에 위치한 주민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특이사항이 있을 시 즉시 주민센터 및 군산재난종합상황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공무원	<p>군산시 00동 소재 00공장에서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명령하오니 5층 재난종합상황실 직결요망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p>반복</p>	

재난유형	대상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붕괴	일반인	<p>00시00분 현재 군산시 00동 소재 00건물에서 00원인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께서는 외출을 삼가시고 특이사항이 있을시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 및 군산재난종합상황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p>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00시00분 현재 군산시 00동 소재 00에서 00원인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께서는 외출을 삼가시고 원활한 사고 수습을 위하여 00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니 이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이 있을시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 및 군산재난종합상황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공무원	<p>군산시 00동 소재 00공장에서 건물붕괴사고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명령하오니 5층 재난종합상황실 집결요망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p>반복</p>	

재난유형	대상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테러	일반인	00시00분 현재 군산시 00동 소재 00공장에서 테러가 발생 하였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께서는 외출을 삼가시 기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00시00분 현재 군산시 00동 소재 00공장에서 테러가 발생 하였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께서는 외출을 삼가주 시고 특이사항이 있을시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 및 군산재난종합상황실로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무원	군산시 00동 소재 00공장에서 테러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 무를 명령하오니 5층 재난종합상황실 집결요망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반복	

[자연재난]

재난유형	대상	단계별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태풍	일반인	주의보	00일(월) 00:00 태풍주의보 발효 해안지대 접근금지, 선박대피, 농수산물 보호 호행위 자제 등 피해없게 주의하세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00 일00시 현재 태풍주의보 발효되었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저지대지역 및 위험주택 거주자께서는 침수에 대비해 주시고 주변 시설물 점검과 가로 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주변 접근을 자제 하여 주시고, 항포구의 선박은 안전하게 결 박하기 바랍니다.	
	일반인	경보	00일(월) 00:00 태풍경보 발효 해안지대 접근금지, 선박대피, 농수산물 보호 호행위 자제 등 피해없게 주의하세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00 일00시 현재 태풍경보 발효되었습니다. 강 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저 지대지역 및 위험주택 거주자께서는 침수에 대비해 주시고 주변 시설물 점검과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주변 접근을 자제하여 주시고, 항포구의 선박은 안전하게 결박하 기 바랍니다.	
	일반인	해제	00일(월) 00:00 태풍주의보·경보 해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비상 근무	현재 군산시 〇〇주의(경)보가 발효 중 임 니다. 비상근무자는 정위치에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유형	대상	단계별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호우	일반인	주의보	00일(월) 00:00 호우주의보, 산사태·상습 침수 등 위험지역 대피, 외출자제 등 안전에 주의하세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00일00시 현재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많은 비로 침수피해가 예상되오니 저지대지역 및 위험주택 거주자께서는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주변 시설물 점검을 저지대 차량은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경보	00일(월) 00:00 호우경보, 산사태·상습침수 등 위험지역 대피, 외출자제 등 안전에 주의하세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00일00시 현재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많은 비로 침수피해가 예상되오니 저지대지역 및 위험주택 거주자께서는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주변 시설물 점검을 저지대 차량은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해제	00일(월) 00:00 호우주의보·경보 해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비상근무	현재 군산시 〇〇주의(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상근무자는 정위치에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유형	대상	단계별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강풍	일반인	주의보	00일(월) 00:00 강풍주의보 발효 간판 등 부착물 고정, 선박결박,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피해없게 주의하세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00일00시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어민들에게서는 선박을 정박시키고 단단히 결박하여 강풍으로 인하여 선박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농민들에게서는 과수 및 원예 작물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여 재산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경보	00일(월) 00:00 강풍경보 발효 간판 등 부착물 고정, 선박결박,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피해없게 주의하세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00일00시 현재 강풍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어민들에게서는 선박을 정박시키고 단단히 결박하여 강풍으로 인하여 선박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농민들에게서는 과수 및 원예 작물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여 재산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해제	00일(월) 00:00 강풍주의보·경보 해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비상근무	현재 군산시 〇〇주의(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상근무자는 정위치에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유형	대상	단계별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풍랑	일반인	주의보	00일(월) 00:00 풍랑주의보, 어선은 출항을 금지하고 출어선은 신속히 대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군산시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어민들께서는 조업을 중단하고 선박을 단단히 결박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선박과 어장시설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월파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경보	00일(월) 00:00 풍랑경보, 어선은 출항을 금지하고 출어선은 신속히 대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군산시 앞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어민들께서는 조업을 중단하고 선박을 단단히 결박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선박과 어장시설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월파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해제	00일(월) 00:00 풍랑주의보·경보 해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비상근무	현재 군산시 〇〇주의(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상근무자는 정위치에 근무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유형	대상	단계별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대설	일반인	주의보	00일(월) 00:00 대설주의보 발효 대중교통 이용, 비닐하우스와 내집앞 눈치 우기, 눈길 미끄럼 주의하세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00 일00시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자가용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시설작업에 지 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을 피하여 주차하 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 슘, 모래 등 비치하시고, 노약자 및 어린이 는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경보	00일(월) 00:00 대설경보 발효 대중교통 이용, 비닐하우스와 내집앞 눈치 우기, 눈길 미끄럼 주의하세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00 일00시 현재 대설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자가용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시설작업에 지 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을 피하여 주차하 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 슘, 모래 등 비치하시고, 노약자 및 어린이 는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해제	00일(월) 00:00 풍랑주의보·경보 해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비상 근무	현재 군산시 ○○주의(경)보가 발효 중 임 니다. 비상근무자는 정위치에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유형	대상	단계별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폭염	일반인	주의보	00월 00일(월) 00:00 폭염주의보 발효! 야외활동 및 농사일 자제, 충분한 물마시기, 물놀이 주의 등 건강에 유의하세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야외 활동과 농사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들은 외출을 삼가고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경보	00일(월) 00:00 폭염경보 발령! 야외활동 및 농사일 자제, 충분한 물마시기, 물놀이 주의 등 건강에 유의하세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야외 활동과 농사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들은 외출을 삼가고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해제	00일(월) 00:00 폭염주의보·경보 해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비상근무	현재 군산시 ○○주의(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상근무자는 정위치에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유형	대상	단계별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지진	일반인	규모/ 진도	00일(월) 00:00 00지역에서 규모00 지진 발생 / 여진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00일(월) 00:00 00지역에서 규모00 지진이 발생하였습니 다. 집이나 건물안에 계신분들은 튼튼한 탁 자나 책상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시고 여진이 멈추게 되면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 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00일(월) 00:00 00지역에서 규 모00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집이나 건물 안에 계신분들은 튼튼한 탁자나 책상 아래 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시고 여진이 멈추게 되면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비상근 무	00일(월) 00:00 00지역에서 규모00 지진 발생 / 여진 등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비상 근무자는 정위치에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유형	대상	단계별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산사태	일반인 (주민)	주의보	<p>금일 00:00부로 00면 00리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니 집주변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산사태발생에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p>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00지역인군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산사태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00지역인군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대상지역 주민들에게서는 산사태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일반인 (통리장)	주의보	<p>금일 00:00부로 00면 00리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니 즉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일반인 (주민)	경보	<p>금일 00:00부로 00면 00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었으니 집주변 상황을 점검하시고,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p> <p>-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p>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00지역인군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대상지역 주민들에게서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00지역인군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대상지역 주민들에게서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p>		
	일반인 (통리장)	경보	<p>금일 00:00부로 00면 00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었으니 즉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공무원	비상 근무	<p>금일 00:00부로 00면 00리에 산사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었으니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p> <p>-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재난유형	대상	단계별	문자전송(안)	음성통보(안)	비고
대조기	일반인 (주민)	주의 (경계)	<p>군산시 대조기 주의 단계(00월 00일(월) 00:00 ~ 00:00)</p> <p>군산시 해수위 상승에 따라 해안가 주변에 운전이나 통행 등을 자제하시고 차량은 안 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p>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00월 00일 00:00 부터 00까지는 백중사리 기간으로 바닷물 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 저지대에서 는 만조시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 다. 00월 00일 00:00 부터 00까지는 백중 사리 기간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 이니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1항</u>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u>군산시장(이하 “시장”)</u> 이 실시하는 재난 예·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u> ----- <u>군산시장</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재난 예·경보시스템(이하 “예·경보시스템” 이라 한다)” 이라 함은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u>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p>	<p>1. ----- -----이라 한다)” 이란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이하 ----- <u>제38조제1항</u>----- ----- -----.</p>
<p>2. “재난 예·경보 운영책임자(이하 “예·경보 운영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 <u>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6조</u> 규정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p>	<p>2. ----- -----라 한다)”란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 <u>시행령</u>」(이하 ----- ----- ----- -----</p>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3.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 책임자(이하 “예·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라 한다)” 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경보 운영책임자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언제든 실시할 수 있도록 제1호의 예·경보시스템을 점검·정비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재난 예·경보 준비)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총괄과장 또는 당직사령은 재난 예·경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징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그밖에 신속한 재난 예·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재난 예·경보의 발령) 안전총괄과장은 재난 예·경보를 발령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 3. -----

 -----란-----

 -----.

제4조(재난 예·경보 준비) 법 제 18조----- 따라 설치된 재난 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 이라 한다)의 근무자는 -----

 ----- 각 호-----
 -----.

- 1.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

제5조(재난 예·경보의 발령) ---

 ----- 각 호-----
 -----.

-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재난 예·경보 발령요건)
재난 예·경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1. (생략)
2. 기상업무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이 행하는 기상특보

제7조(예·경보 운영책임자 지정)
 ① 시장은 예·경보 운영책임자를 연중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경보 운영책임자의 근무를 교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시장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인력 부족으로 재난 예·경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무요원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정비) ① 제2조제3호 규정의 예·경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제6조(재난 예·경보 발령요건)
재난 예·경보의 발령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기상법」 제13조 -----
 ----- 제8조제2항-----

제7조(예·경보 운영책임자 지정) ① 예·경보 운영책임자는 상황실의 근무자로 한다.

②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점검·정비) ① -----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
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하고, 별지 서식의 점검기록부
에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9조(예·경보시스템 관리책임
자 지정) 안전총괄과장은 제8조
제1항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비의 확보) 시장
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경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68조제2항 및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각 호-----

-- 별지 제1호서식-----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예·경보시스템 관리책임
자 지정) ----- 제8조
제1항-----

지정·운영하며, 별지 제2호서
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
-.

제11조(유지관리비의 확보) 군산
시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 ----

-----법 제68조제3항 ---
---- 제74조-----

--.